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란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 사항을 확인하고,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검증의 대상, 방법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④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
2.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

제10조의10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제공은 가상자산의 가치·수량과 관계없이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10조의11제1항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제2호 중 “대표자 및 임원”을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로 한다.

5. 가상자산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가 법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7. 최근 3개 사업연도,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8.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7조제1항제1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③ 법 제7조제1항제1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대주주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관련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2호·제35호”를 “제2의3호·제32호·제35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조세범 처벌법」

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④ 법 제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은 별표 1과 같다.

⑤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⑥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전문성·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지 못한 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자
- 가.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 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3.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⑦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거나 법인의 합병·폐업·파산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20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중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를 “제8호까지”로 한다.

6.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 가.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제10조의20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요구에도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거래를 거절할 것

7.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가상자산거래에 상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거래(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이
전받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 이전거래”
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할 것

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내용, 방법, 수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는 가목에 따른 평
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거래가 자금세탁행위
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
해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허용할 것. 다만,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
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제10조의
10제2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2)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거래가 자금세탁행위

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금지할 것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과 가상자산 이전거래
의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허용할
것

4) 1) 및 2)에 따른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
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른다.

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금융정
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불법재산 등으로 의
심되는 거래 등으로 보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할 것

라. 가상자산 이전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

8. 가상자산사업자가 비수탁형 개인지갑(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생성되거나 유지·관리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주소를 말한
다.)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
가. 제7호다목 및 라목까지의 사항을 이행할 것

나. 고객과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상
자산 이전거래를 허용할 것. 다만,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

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1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제15조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업무를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제17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0, 제10조의20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제10조의12제4항 관련)

1.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 가.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이나 외국 금융관계법률(금융관계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부터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 1)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 3)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 마. 그 밖에 사회적 신용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2.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 및 대표자의 사회적 신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내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와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 249조의13의 투자 목적회사(이하 “투 자목적회사”라 한	가.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p>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p>	<p>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2)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3)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2.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로서 개인인 경우</p>	<p>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3.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인 경우</p>	<p>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나.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4.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인 경우</p>	<p>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p>

	<p>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제2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가목, 다목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	---

비고

1. 제10조의11제2항 각 호의 자가 위 표 제1호부터 제2호까지 또는 제4호(다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의 요건만 적용하고, 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자기자본은 최근 분기 말 이후 등록하려는 날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제3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외국법인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이 등록신청 시 지정하는 회사(해당 외국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외국법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제3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할 때에는 해당 외국법인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사를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u>법 제2조제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p> <p>② <u>법 제2조제7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p> <p>1. <u>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u></p> <p>2. <u>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u></p>
<p>제10조의2(고객확인 의무의 범위 등) ① (생략)</p> <p><신 설></p>	<p>적용</p>			<p>제10조의2(고객확인 의무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u></p>

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란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 사항을 확인하고,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검증의 대상, 방법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정부에서 실시한 위협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 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제공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할 것

2. ~ 4. (생략)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

2.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및 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 제공) -----

-----.

1. 정보제공은 가상자산의 가치·수량과 관계없이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하여야 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

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5. 가상자산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주주를 포함한다)가 법 제7조 제3항제3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7. 최근 3개 사업연도,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8.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법 제7조제1항제1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 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생 략)
- 2.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한다)

3. ~ 5. (생 략)

③ (생 략)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② (생 략)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③ 법 제7조제1항제1의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대주주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

-----.

1. (현행과 같음)

2. -----
--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 --

3. ~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 (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설>

<신설>

<신설>

8. (생략)

<신설>

<신설>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

1. ~ 5. (현행과 같음)
6. -----

--제2의3호·제32호·제35호

7.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조세법 처벌법」
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현행 제8호와 같음)

④ 법 제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 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은 별표 1과 같다.

⑤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⑥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적

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전문성·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지 못한 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자

가.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3.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신 설>

<신 설>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 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 5. (생략)

<신 설>

⑦ 법 제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거나 법인의 합병·폐업·파산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

-----.

1. ~ 5. (현행과 같음)
6.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 가.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제10조의10제2호 및 제3호에

<신 설>

따른 정보를 제공받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
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
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요구에도 정
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
공받지 못한 경우 거래를
거절할 것

7.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 가상
자산사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가상자산거래에 상
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영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와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거
래(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이
전받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 이
전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할
것

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내용, 방법, 수준 등

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는 가목
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
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
를 것

1)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와
의 가상자산 이전거래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
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
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한해 가상자산 이전거
래를 허용할 것. 다만,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또
는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제10조의10제2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2)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와
의 가상자산 이전거래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금지할 것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과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허용할 것

4) 1) 및 2)에 따른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 설>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
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불법재
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으로 보아 금융정보분석
원장에 보고할 것

라. 가상자산 이전거래와 관
련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
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
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

8. 가상자산사업자가 비수탁형
개인지갑(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생성되거나
유지·관리되지 아니하는 가
상자산주소를 말한다.)과 가상
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
가. 제7호다목 및 라목까지의
사항을 이행할 것

나. 고객과 가상자산 이전거
래의 상대방이 동일한 경
우에 한해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허용할 것. 다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① (생략)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③·④ (생략)

제15조(감독·검사 등) ① ~ ③ (생략)

<신설>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를 금지하여야 한다.

9. -----
-- 제8호까지-----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2와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감독·검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제15조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에

④ ~ ⑦ (생략)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
다.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
보에 관한 업무를 제3항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별표 3과 ----
--.